##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백혜련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2397 발의연월일: 2020. 7. 27.

발 의 자:백혜련·기동민·김민철

김민석 · 김남국 · 신정훈

홍성국 · 김회재 · 박성준

남인순 · 최기상 · 박영순

의원(12인)

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사업주의 대리인·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사업주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사업주에 대하여도 벌금형을 과하도록 하는 양벌규정을 두고 있음.

그런데 헌법재판소가 2019년 4월 11일 선고한 2017헌가30 결정에서 「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」 제94조는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한 종업원 등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그 법인 또는 개인을 선임·감독상의 과실 유무와 상관없이 함께 처벌하는 것이 형사법의 책임주의원칙에 반한다는 이유로 위헌결정을 한 바 있음. 이에 따라 「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」이 개정되어 법인·단체 또는 개인이 종업원등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주의와 감독을다한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되었음.

이에 이 법에도 사업주가 사업주의 대리인·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벌금형을 과하지 않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(안 제23조 단서 신설).

법률 제 호

##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3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사업주가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.

## 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3조(양벌규정) 사업주의 대리	제23조(양벌규정)
인ㆍ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	
사업주의 업무에 관하여 제21	
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해당하	
는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	
자를 벌하는 외에 그 사업주에	
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	
과한다. <u>&lt;단서 신설&gt;</u>	<u>다만, 사업주가 그 위반행</u>
	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
	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
	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
	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